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14096(본소), 2016다1410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운송료]

재판경과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14096(본소), 2016다14102(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3805(본소), 2015나3812(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23 선고 2013가단2316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이경택, 김영준, 권승형, 서충식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남일

판결 선고 2019. 1. 3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3805(본소), 2015나3812(반소)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 2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경 소외 C으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의 E대리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1. 10.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서비스 중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반품·교환품회수, 내용확인업무와 거래처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제2조).

(2) 원고는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영업행위를 피고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기존 거래처 외에 가능한 한 많은 신규 거래처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 2항).

(3)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운송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피고는 원고와 상호 협의하여 '급지별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한다(제8조 제4항).

(4) 원고는 집배송의 책임 및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피고가 제정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부속서인 '집배송업무매뉴얼', '집배송 및 화물사고업무집', '셔틀운송지침' 및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미리 정한 운송수수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배송기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여 운송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와 배송기사들 사이의 급여지급방식으로는 기본급을 지불하는 방식과 건당 배송료 형태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었고, 원고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라.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택배기사들은 원고에게 수시로 배송료 단가 인상과 유류비 지원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배송료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한 이후 거래처 및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마. 원고는 위 대리점 계약 체결 이후 적자가 심해지자 2012. 11. 7. 피고에게 2013. 1. 7.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13. 1. 7.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3.

가. 상고이유 주장의 배경이 된 문제의식에 공감할 면이 없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구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대량의 불특정 다수 거래처(화주)의 택배화물을

공동운송 등의 방법으로 특정지역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집하·인계 내지 배송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와 수평적 협업관계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업무방식이 피고가 정한 집배송업무매뉴얼 등 다양한 매뉴얼을 통하여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실상 자율성이 없다.

(3)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여 피고 명의로 거래처와 택배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운송료를 청구 내지 수금하는 것도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귀속시킬만한 발주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제8조 제4항에서 운송수수료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정한 운송수수료율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도 없는 이상, 가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거래가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하도급법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에서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운송수수료율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구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나 원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